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95
------------	------

발의연월일 : 2017. 9. 12.

발 의 자 : 황주홍 · 이찬열 · 박 정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전혜숙 · 김경진 · 김중로

김종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2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